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3
----------	-----

제출년월일 : 2005. 3.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유류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화장비용의 증가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재정압박이 심각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화장장 근무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제5조)
 - 사용료단가 인상을 : 33 % ~ 170% 증가
- 사용료의 반환 신설(제5조의1)
- 사용료감면대상자의 조정(제6조)
 - 현재 : 제천시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감면)
 - 조정 : 제천시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50%감면)
- 화장장 사용시간의 조정(제7조)
 - 현재 : 동절기 - 17:00까지, 하절기 - 18:00까지
 - 조정 : 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근무 시간

3.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 6024 호 1997. 09. 07 제정)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3742호 1984.08.02)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첨부:
1. 관계법령 발췌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3.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결과서 사본 1부.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충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도민”을 “시민”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를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로 한다.

제4조 중 조문의 제목을 “사용신고”로 한다.

제5조 중 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한다.

요율구분	기준	제천시민	타 시·군민
1. 15세이상	1 구 당	110,000원	200,000원
2. 15세미만	”	80,000원	140,000원
3. 가장유골	”	80,000원	140,000원
4. 사산오물	”	40,000원	70,000원
5. 병원적출물	Kg당	10,000원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1(사용료반환) ①사용료 납부 후 화장장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에 납부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시장은 시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자.
- 2.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자.
- 3.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규정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한다

① 화장장의 사용시간은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료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화장장사용을 신청한 자와 사용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00 년도			부 년월일	기 부 액	정 납 부 액	과 오 금	반 환 가 산 금 액	반 환 가 산 금 액	납부자 주 소 명
관	항	목							
경상적 세 외 수 입	사용료 수 입	기 타 사용료							

과오납 사유 :

위 과오납금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람.

2004년 12월 일

청 구 자 (과오납금 환급대상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위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 수 관 :

성 명 : (인)

제천시 징수관 귀하

입 금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 번호	예금주명
구 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자) 충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민이 아닌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 ---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이 ---.																																																
제4조(사용허가) ①-②(생략)	제4조(사용신고) ①-②(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징수) 화장장 사용신고를 펼한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징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요율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 민</th> <th style="text-align: center;">타시군</th> </tr> </thead> <tbody> <tr> <td>1. 15세이상</td> <td>1 구 당</td> <td>90,000원</td> <td>140,000원</td> </tr> <tr> <td>2. 15세미만</td> <td>'</td> <td>60,000원</td> <td>90,000원</td> </tr> <tr> <td>3. 개장유골</td> <td>'</td> <td>45,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4. 사산오물</td> <td>'</td> <td>30,000원</td> <td>50,000원</td> </tr> <tr> <td>5. 병원적출물</td> <td>Kg당</td> <td>3,700원</td> <td></td> </tr> </tbody> </table>	요율구분	기 준	시 민	타시군	1. 15세이상	1 구 당	90,000원	140,000원	2. 15세미만	'	60,000원	90,000원	3. 개장유골	'	45,000원	70,000원	4. 사산오물	'	30,000원	50,000원	5. 병원적출물	Kg당	3,7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요율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천시민</th> <th style="text-align: center;">타시·군민</th> </tr> </thead> <tbody> <tr> <td>1. 15세이상</td> <td>1 구 당</td> <td>110,000원</td> <td>200,000원</td> </tr> <tr> <td>2. 15세미만</td> <td>'</td> <td>80,000원</td> <td>140,000원</td> </tr> <tr> <td>3. 개장유골</td> <td>'</td> <td>80,000원</td> <td>140,000원</td> </tr> <tr> <td>4. 사산오물</td> <td>'</td> <td>40,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5. 병원적출물</td> <td>Kg당</td> <td>1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요율구분	기준	제천시민	타시·군민	1. 15세이상	1 구 당	110,000원	200,000원	2. 15세미만	'	80,000원	140,000원	3. 개장유골	'	80,000원	140,000원	4. 사산오물	'	40,000원	70,000원	5. 병원적출물	Kg당	10,000원	
요율구분	기 준	시 민	타시군																																														
1. 15세이상	1 구 당	90,000원	140,000원																																														
2. 15세미만	'	60,000원	90,000원																																														
3. 개장유골	'	45,000원	70,000원																																														
4. 사산오물	'	30,000원	50,000원																																														
5. 병원적출물	Kg당	3,700원																																															
요율구분	기준	제천시민	타시·군민																																														
1. 15세이상	1 구 당	110,000원	200,000원																																														
2. 15세미만	'	80,000원	140,000원																																														
3. 개장유골	'	80,000원	140,000원																																														
4. 사산오물	'	40,000원	70,000원																																														
5. 병원적출물	Kg당	10,000원																																															
〈신설〉	<p>제5조의1(사용료반환) ① 사용료 납부 후 화장장을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서에 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료의 감면) <u>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제천시민에 한함)나 사용료를 납입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u></p>	<p>제6조(사용료의 감면) <u>시장은 시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u></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u> 2. <u>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자</u> 3. <u>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u> 4.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7조(화장장 사용시간) ① <u>화장장의 사용시간은 시민 편의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동절기(11월~2월) : 09:00~17:00</u> 2. <u>하절기(3월~10월) : 09:00~18:00</u></p> <p>② <u>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시간 외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u></p>	<p>제7조(화장장 사용시간) ① <u>화장장 사용시간은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근무시간으로 한다.</u></p> <p>②----- ----- <u>사용시간</u>-----</p>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과오납금반환청구서</u></p> <p style="text-align: center;"><u>“표” 별지 참조</u></p>

관 계 법령 발 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자의 범위)

-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 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제2조 (개별가구)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제38조 (보장시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4.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 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

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 삭제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 행위로 인한 경우

해외이주법**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제1항제1호**

-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제1항제1호, 제4호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증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제4호,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요양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제4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

-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①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 522호

제 천 시 보

2005. 1. 7(금)

제천시공고 제2005-2호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3일
제 천 시 장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안)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유류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화장비용의 증가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재정압박이 심각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화장장 근무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제5조)
 - ▣ 사용료단가인상을 : 33%~ 170% 증가
- 사용료의 반환 신설(제5조의1)
- 사용료감면대상자의 조정(제7조)
 - ▣ 현재 : 제천시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감면) ⇒ 조정 : 제천시민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50%감면)
- 화장장 사용시간의 조정(제8조)
 - ▣ 현재 : 동절기-17:00까지, 하절기-18:00까지 ⇒ 조정 : 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근무시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월 23일까지 제천시장(참조:복지사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043-640-5424 FAX 640-540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제 천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알림

1. 청풍관광개발사업소-905(2004.11.9), 제천환경관리사업소-5099 (2004.11.24), 복지 사업과-19220(2004.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공공요금조정에 대한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개최코자 하오니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회의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에게 송부 할 심의(안) 22부를 2004.12.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물가 대책실무회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물가대책위원회의개최

가. 일 시 : 2004. 12. 16 10:00

나. 장 소 : 영상회의실(2층)

다. 참석대상: 물가대책위원회 위원20명

라. 회의내용

- 청풍문화재관람료조정(안)

- 제천시립화장장사용료인상(안)

- 하수도사용료조정(안)

2. 물가대책실무회의 심의결과

- 청풍문화재관람료조정(안) : 조정책정

- 제천시립화장장사용료인상(안) : 원안책정

- 하수도사용료조정(안) : 원안책정. 끝.

제 천 시장

관인생략

수신자 복지사업과장,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 지방행정주사보 김승환

투자통상실장

전결 12/10
윤종설

참조자 경제통상실장

최남용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C 일등 제천”

제천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 결과 통보

1. 투자통상실-17901(2004.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회의일시 : 2004. 12. 16

나. 참석 : 제천시 물가대책위원 12명

다. 심의안건 :

-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조정(안)
- 제천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조정(안)
- 제천시하수도사용료인상(안)

라. 심의결과 : 원안승인. 끝.

제천시장

관인생략

수신자 복지사업과장,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지방행정주사보 김승환

투자통상실장

전결 12/20
윤중섭

협조자 경제통상팀

최남용

화장장사용료·납골당사용료및관리비 조정(안)

1. 필요성(목적)

- 제천시립화장장은 1996년 현대화된 시설로 개보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과다 사용으로 시설 노후가 심화되고 있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50여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의 경우 일반사체 726건을 화장하였으나 그중 제천시민은 331건, 타지역 시민은 395건을 화장하여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단양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등 타 시군 시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저렴하고 대기인 수가 적은 우리 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음
- 화장장 설치 예산은 국·도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시설 유지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산 및 인력이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납골당이 2006년이면 만위(滿位) 예상되어 2004년 5월부터 10억원을 투입하여 10,000위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납골당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의 사용료 및 관리비로는 납골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화장장 사용료와 납골당사용료및관리비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제5조(사용료징수)
-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9조(사용료및관리비)

3. 연도별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 현황

○ 화장 실적

(2004. 11. 30일 현재)

구 분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5,310	740	1,156	865	994	1,555
개장유골	소계	1,937	128	583	248	254	724
	관내거주자	814	93	119	143	126	333
	관외거주자	1,123	35	464	105	128	391
사 체	소계	3,301	601	553	597	726	824
	관내거주자	1,339	182	176	295	331	355
	관외거주자	1,962	419	377	302	395	469
사 태		72	11	20	20	14	7

○ 납골 실적

(2004. 11. 30일 현재)

구 분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2,744	303	716	505	571	649
개장유골	소계	915	49	356	133	107	270
	관내거주자	413	32	84	86	59	152
	관외거주자	502	17	272	47	48	118
사 체	소계	1,829	254	360	372	464	379
	관내거주자	827	107	103	195	229	193
	관외거주자	1,002	147	257	177	235	186

4.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예산 현황

□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

○ 시설 개·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 예산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 산 액(A)				집 행 액(B)				집행잔액(C=A-B)			
	계	국고보조	시·도보조	자체	계	국고보조	시·도보조	자체	계	국고보조	시·도보조	자체
1999	26,000	-	-	26,000	25,440	-	-	25,440	560	-	-	560
2000	18,000	-	-	18,000	14,500	-	-	14,500	3,500	-	-	3,500
2001	18,000	-	-	18,000	16,200	-	-	16,200	1,800	-	-	1,800
2002	418,228			418,228	418,228			418,228	0			0
2003	1,003,477	700,000	150,000	153,477	53,356	40,386	8,311	4,659	950,121	659,614	141,689	148,818

※ 2003년도 집행 잔액은 납골당 확충사업비 잔액(942,941천원)이 포함된 예산임

- 납골당 확충 : 200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2004. 5. 착공, 2004. 12월 준공 예정)

○ 인건비 및 유류대금 등 일반 수용비 예산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비고
	계	시·도 보조금	자체	계	보조금	자체	계	보조금	자체	
1999	88,728	-	88,728	83,159	-	83,159	5,569	-	5,569	
2000	92,431	-	92,431	92,431	-	92,431	0	-	0	
2001	138,150	4,800	133,350	129,989	4,800	125,189	8,161	-	8,161	
2002	190,431	9,600	180,831	168,159	9,600	158,559	22,272	-	22,272	
2003	629,348	9,600	619,748	576,611	9,600	567,011	52,737	-	52,737	명시이월 49,011

□ 연도별 화장 및 사용료 징수 대비 화장장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화장		납골		사용료계	집행액계	손실액	비 고
	건수	사용료	건수	사용료				
1999년	681	62,925	311	36,090	99,015	108,599	- 9,584	○ 자체예산투입에 대한 비교 결과이며
2000년	740	69,825	303	35,250	105,075	106,931	- 1,856	○ 2002, 2003년 예산은 인근 주민요구에 의한 토지 매입비가 포함된 예산임
2001년	1,156	96,405	716	94,100	190,505	141,389	49,116	○ 2001년은 개장유골의 수가 많아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2002년	865	78,700	505	62,010	140,710	576,787	- 436,077	
2003년	994	95,640	571	73,100	168,740	675,670	- 507,020	

5. 우리시 화장장·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기준	제천시민			타 시 군		
			계	화장장	납골당	계	화장장	납골당
화장장사용료	15세 미만	1구당	160,000	60,000	100,000	250,000	90,000	160,000
	15세 이상	"	190,000	90,000	100,000	300,000	140,000	160,000
	개장 유골	"	145,000	45,000	100,000	230,000	70,000	160,000
	사산·사태	"	30,000	30,000		50,000	50,000	
	적 출 물	1 kg당	3,700					

※ 납골당 사용료는 안치단 및 30년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사용료+관리비)

6. 화장장·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안)

○ 화장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分	기 준	시 민				타 시 군			
		기 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기 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15세 미만	1구당	60,000	80,000	증 20,000	33%	90,000	140,000	증 50,000	55%
15세 이상	"	90,000	110,000	증 20,000	22%	140,000	200,000	증 60,000	43%
개 장 유 골	"	45,000	80,000	증 35,000	77%	70,000	140,000	증 70,000	100%
사 산·사 태	"	30,000	40,000	증 10,000	33%	50,000	70,000	증 20,000	40%
병원직출물	KG당	3,700	10,000	증 6,300	170%				

○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 제천시민

(단위 : 원)

구 分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기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기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기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1구 당	100,000	160,000	증 60,000	60%	60,000	100,000	증 40,000	67%	40,000	60,000	증 20,000	50%

- 타 시군 시민

(단위 : 원)

구 分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기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기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기준	변 경	증 감	증 감율
1구 당	160,000	400,000	증 240,000	150%	100,000	300,000	증 200,000	200%	60,000	100,000	증 40,000	67%

7. 타시·군 시설사용료 현황

○ 인천시립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관 내 주 민				관 외 주 민			
		계	화장장	납골당	계	화장장	납골당		
15세 미만	1구당	190,000	40,000	150,000	600,000	200,000	400,000		
15세 이상	"	210,000	60,000	150,000	700,000	300,000	400,000		
개장 유골	"	200,000	50,000	150,000	250,000	250,000	400,000		
사산 오물	"	30,000	30,000	0	150,000	150,000			
적 출 물	1 kg당	5,000	5,000	0	25,000	25,000			

○ 충주시립 화장장 사용료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충주시민	도내 타시군	타 시 도
15세 미만	1구당	80,000	100,000	140,000
15세 이상	"	110,000	150,000	200,000
개장 유골	"	80,000	100,000	140,000
사산 오물	"	40,000	50,000	70,000
적 출 물	1 kg당	10,000	10,000	10,000

○ 원주시립 화장장 사용료 현황

(단위 : 원)

구 分	기 준	사 용 료	
		원주시민	타 시 군
15세 미만	1구당	무료	70,000
15세 이상	"	무료	100,000
개장 유골	"	50,000	50,000

※ 원주시립 화장장은 재정 손실이 심각하여 조정 계획임 (유류대 6개월 연체)

○ 성남시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관 내 주 민			관 외 주 민		
		계	화장장	납골당	계	화장장	납골당
15세 미만	1구당	144,000	44,000	100,000	700,000	200,000	500,000
15세 이상	"	150,000	50,000	100,000	800,000	300,000	500,000
개장 유골	"	126,000	26,000	100,000	750,000	250,000	500,000
사산 오물	"	20,000	20,000	0	150,000	150,000	

○ 마산시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관 내 주 민			관 외 주 민		
		계	화장장	납골당	계	화장장	납골당
15세 미만	1구당	222,000	22,000	200,000	564,000	64,000	500,000
15세 이상	"	219,500	19,500	200,000	628,000	128,000	500,000
개장 유골	"	210,500	10,500	200,000	535,000	35,000	500,000
사산 오물	"	8,500	8,500	0	28,500	28,500	

8.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관리비 소요예산 분석 자료

- 시체 1구당 화장 시 소요예산 - 161,000원 정도 소요
 - └ 경유 구입 : 74,000원 정도(약 80ℓ 소요, 보고일 현재 ℥ 당 단가 925원)
 - └ 장비 손실 : 67,000원 정도 (화장로의 내구 연한 : 5년 정도, 1기당 설치비 : 3억원 정도 소요)
 - └ 기타수용비 : 20,000원 정도(전기세 및 기타 잡비)
 - ※ 운영인력(기능1, 일용2)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은 제외하였음
 - ※ 장비 손실료 산정은 화장로 1기당 설치비를 내구연한인 5년(99년~2003년)의 화장 건수(4,436건)로 제(나눔)하여 산출한 금액임
 - ☛ 따라서 운영인력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제천시민의 경우 71,000원, 타 시군 주민의 경우 21,00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납골당 사용료 현황 - 221,000원 정도 소요
 - 납골 안치단 현황
 - 제1납골당 : 목재 안치단 (1위당 구입 가격 : 22,000원 정도)
 - 제2납골당 : 알루미늄세시 (1위당 구입 가격 : 40,000원 정도)
 - 신설납골당 : 대리석 또는 동(銅) 제품 (1위당 추정 : 100,000원정도)
 - 납골 안치단 1위 당 사용 및 관리 소요예산 (10년 운영 계획으로 산술)
 - └ 납골당건립비 분담 : 100,000원 ($1,000,000,000원 \div 10,000위$)
 - └ 안치단구입비 분담 : 100,000원 (1위당 100,000원 정도)
 - └ 관리 인건 비 분담 : 18,000원정도(일용-1명인부임 연 $18,000,000원 \times 10년 \div 10,000위$)
 - └ 기타 수 용 비 분담 : 3,000원정도 (전기요금등 1년 $3,000,000원 \times 10년 \div 10,000위$)
 - ※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납골당 건물 유지 보수비등은 포함되지 아니한 소요예산임
 - ☛ 따라서 신축되는 납골당의 경우 납골 안치단 1위 당 제천시민의 경우 121,000원, 타 시군 주민의 경우 61,000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9. 소비자 물가지수 (재정경제부 자료)

년도	지수	상승률 (%)	비고
1995	82.3	4.8	
1996	86.4	4.9	
1997	90.2	6.6	
1998	97.0	4.0	
1999	97.8	1.4	
2000	100.0	2.8	
2001	104.1	3.2	
2002	106.9	3.7	
2003	110.7	3.4	
2004. 9	115.9	3.9	최근5년 18.4%
계		41.3	

10. 담당부서 종합의견

- 화장장 운영에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화장 및 납골은 곧 시 재정의 손실을 가지고 온다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으며 납골 안치 단 가격의 상승으로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혐오시설에 대한 넘비현상으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주변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어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시민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차별화 필요
 - ☞ 따라서 조정안과 같이 조정하여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학충사업 관련 주민 요구 사항

세부 사업명	사업량	예상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15,110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개화마을)	B=6.5m, L=1.5km	2,100	2005년 반영추진 예정
농로 확·포장 공사	B=3m, L=15km	1,500	2005년 반영추진 예정
소하천정비	L=10km	1,000	2005년 반영추진 예정
상·하수도 설치	134가구 377명	2,000	추진연도 미정(추진 가능)
선사시대박물관 또는 농업박물관 유치	1 개소	3,000	문화관광과에서 계획 수립중
포천리 장학재단 설립지원	기금 조성 지원	3,000	불가
화장장 납골당 하수관 설치	L=750m	750	추진 중
노인 여가 활동 시설설치	게이트볼장1개소	100	숙원사업으로 변경 추진 완료
어린이 놀이터 설치	1 개소	100	추진연도 미정(
정보화 마을선정	134가구 377명		2005년 정보센터로 변경 추진
년간 화장장 수익금 마을 지원	20 %		불가
숙원사업 마을 자체 시공권 부여	일체		불가
화장장 주변 사유지매입 및 무상 임대	159,051m ²	1,560	단계별 매입중, 무상임대 불가
화장장일대 공원화사업	1 개소		부지 매입 후 조성
납골당 식당 무상 임대	집기 및 시설일체		2005년 예산 반영 추진
포천리 주민 납골 안치단 무료 지원	1가구당 2기		조례 개정 후 추진
납골당 운영인력 포천리 주민 채용	3명		현재 : 주민 2명 채용
집단주택단지 조성	1 개소		미정